

#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발급·처리일	처리기간 90일
신청인	교육실시기관의 명칭		
	소재지		
	교육실시기관의 대표자		
교육실시기관 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도매업무관리자 교육실시기관		
변경 내용	지정받은 사항	변경하려는 사항	사유

「약사법」 제37조의2·제37조의4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3조의5제2항·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(지정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지정	1.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 2.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 3. 수강료 산정의 근거자료 4. 교육시행규정 및 시행계획	수수료
	변경 지정	1.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2. 변경사유서 및 근거서류	없음

### 처리 절차

